

의안번호	2203118
의 퇴 인	소병훈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계번호	24C30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4제2항(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 기간이 포함되도록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4제2항(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안 제4조의4제2항)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계약 기간에 연습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에 따라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증가할 수 있음²⁾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이고,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4.8% 수준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은 평균 5개월로 1~3개월이 50.7%, 3~6개월이 20.9%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년간 계약에서 연습기간이 포함된 계약은 41.2%로 조사되었음

[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조사 대상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의 예술인 5,109명
고용보험 가입률	조사 대상 예술인의 27.6%
실업급여 수혜 경험	조사 대상 예술인의 4.8%
계약기간	사례 수 4,620건, 평균 5개월 1~3개월 50.7%, 3~6개월 20.9%, 6~12개월 13.3%, 12개월 이상 15.2%
계약기간에 연습기간 포함 여부	사례 수 4,602건 중 연습 기간 포함 4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2)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아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예술인의 수와 구직급여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연습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될 예술인의 수와 해당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